AN스카우트분쟁 판결“ 초읽기 ”

「잉크 스카우트」판례 영향으로 동서석유화학 다소 유리

동서석유화학과 태광산업간 AN사업을 둘러싼 인력스카우트 시비가 법원의 최종 판결문 송달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이와 유사한 법정시비에 대해 「인력스카우트를 이용한 생산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AN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되는 등 관련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22일 모나미가 마이크로세라믹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청구소송에서 「마이크로세라믹사는 유성잉크제조법 등 모나미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나미에서 14년간 근무하던 연구실장 이모씨가 마이크로세라믹사로 스카우트되면서 모나미제품의 잉크제조방법 수십가지 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이 적힌 노트를 함께 가지고 간뒤 유성잉크를 개발하는데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마이크로세라믹사는 향후 유성잉크의 생산 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판결문송달을 앞두고 있는 태광산업과 동서석유화학간 스카우트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이 초래될 것이 확실시 되는 등 최종 결정과정에서도 법원의 이같은 판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석유화학측은 「취지서 및 답변서의 내용이나 이번 판례 등으로 미루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태광산업측 역시 「판례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스카우트 자체가 기존 기술외에 다른 특정기술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양측 모두 법원의 최종판결이전 어떠한 주장이나 입장양보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동서석유화학과 태광산업간 AN사업을 둘러싼 인력스카우트분쟁은 94년11월 태광산업이 AN시장에 진출하면서 동서석유화학의 기술부장 신모씨를 스카우트하자 동서석유화학이 이에반발 「핵심기술인력 스카우트로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며 「전업정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만일 이번 분쟁이 「기술상의 침해」로 결론 내려질 경우, 「잉크 스카우트」판례에 이어 또 한번의 부당한 스카우트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그 여파가 국내기업의 해외 기술도입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3/20>